

제232회 임시회
2004. 10. 25 (월)

검 토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관광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10월 8일
-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람시간 변경과
- 입장료 면제에 대한 기타 조항 및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 조항을 추가하여 관람객에 대한 편의 증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(조례 제2807호 2004.7.1)에 따라 동절기 관람시간을 연장(오후 5시까지를 오후6시까지로)하고 대표시간(관람 시간종료 1시간 전에서 1시간 30분전까지)을 조정하도록 함(제6조, 제8조)
- 입장료면제 규정중 “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조항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(제7조)
-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(제9조, 제9조의1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람시간 변경과 입장료 면제에 대한 기타 조항 및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을 추가 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나
- 제6조 규정의 동절기 관람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은 동절기 일몰시간이 오후 5시 정도로 야간 연장시 관람객의 안정성이 우려되며
- 제7조제2항 입장료면제 규정중 “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 조항 신설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도지사의 재량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, 또한 다른 관람객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